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47
----------	-------

제출년월일 : 2026.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춰 「마포구 보육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2조)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
- 다.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안 제22조)

##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6. 3. 5.~2026. 3. 25.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에 관한 사항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위촉**”을 “**위촉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를 “**긴급한 경우이거**”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수급자**”를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중전의 제5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1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영 제13조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보육전문요원 및**”을 “보육전문요원,”으로, “**상담전문요원**”을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간연장형어린이집**”을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후단 중 “**공개경쟁**”을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탁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3년 이상 5년 이내의”를 “그 남은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 중 “시행규칙 제25조”를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를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로, “이외에 어린이집에”를 “이외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간연장”을 “연장보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시간연장보육”을 “그 밖의 연장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어린이”를 “영유아”로 한다.

제40조 중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으로, “보건복지부”를 “「영유아보육법」 소관 중앙부처”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p> <p>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p> <p>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p> <p>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6. 삭 제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② ~ ④ (생략)

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  
-----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  
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회의)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  
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  
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  
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  
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  
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에 관한 사항

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  
장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  
--.

③ -----  
-----  
-----  
-----  
-----  
----- 긴급한 경  
우이거-----  
----- 그렇지 않다.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신 설>

<신 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생 략)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한부모가족

<신 설>

<신 설>

⑥ (생 략)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  
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  
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  
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11. (현행 제4호와 같음)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1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  
른 다문화가족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8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이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영 제13조에 따른다.

제15조(구성) ① -----  
-----  
-----  
-- 보육전문요원, -----  
-----  
----- 상담전문요원 및 영  
유아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  
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  
아발달지원전문요원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  
-----  
-----  
-----  
-----  
-----  
-----  
-----  
----- 그 밖의 연장형 어린  
이집 -----.

② -----  
-----  
-----  
-----  
-----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위탁기간) ① 구립어린이  
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  
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  
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  
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  
1항 이외에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삭 제

제22조(위탁기간) ① -----  
-----.  
다만-----  
----- 그 남은 임기-----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  
-----  
-----  
-----  
----- 재위탁할 수 있  
다.

제28조(위탁의 취소) -----  
-----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  
-----  
-----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해야 한다.

제35조(비용의 보조 등) ① -----  
-----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  
6조 -----  
----- 이외에도 -----  
-----.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4. 삭 제

5. 학부모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간연장 비용

6. 삭 제

7. 법 제26조에 따른 시간연장 보육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8. 어린이 관련 행사, 보육교직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9. ~ 11. (생략)

②·③ (생략)

제40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삭 제>

5. -----  
-- 연장보육 ----

7. ----- 그 밖의  
연장형 -----  
-----

8. 영유아 -----  
-----  
-----

9.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준용규정) -----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  
----- 「영유아보육법」 소  
관 중앙부처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이 름	교육체육국 보육정책과 김남희
연락처	02-3153-1662